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(중대재해기업처벌법)

공포
2021. 01. 26

법 조항		주요 내용
제1장 총칙 	제1조 (목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또는 사업장,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○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·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○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, 경영책임자,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○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
	제2조 (정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대재해 : “중대산업재해”와 “중대시민재해”를 말함 ○ 중대산업재해 :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정의하는 산업재해로서 아래 해당 재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.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.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적용 제외 :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(개인사업주에 한정) 또는 경영책임자 ○ 중대시민재해 :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,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, 제조, 설치,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아래 해당 재해(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.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.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, 학교, 1,000㎡ 미만의 다중이용업소, 시내버스 등 ○ 종사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「근로기준법」상의 근로자 나.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.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○ 사업주 :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,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○ 경영책임자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.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공기업의 장, 공공기관의 장
제2장 중대 산업 재해 	제3조 (적용범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용 제외 :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(개인 사업주에 한정) 또는 경영책임자 등
	제4조 (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조치 실시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(대통령령으로 정함) 2.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.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.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(대통령령으로 정함)
	제5조 (도급, 용역,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3자에게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 의무 (다만,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)
	제6조 (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4조 또는 제5조(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)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망사고 :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(병과 가능) - 사망 외 사고 :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1/2까지 가중
	제7조 (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제6조(중대산업재해 처벌)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벌금형을 과함(양벌 적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망사고 : 50억원 이하의 벌금 - 사망 외 사고 : 10억원 이하의 벌금
	제8조 (안전보건교육의 수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교육 이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(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·징수)
제3장 중대 시민 재해 	제9조 (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,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 조치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·제조·판매·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, 제조, 관리상의 결함 -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, 설치, 관리상의 결함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(대통령령으로 정함) 2.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.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.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(대통령령으로 정함) ○ 제3자에게 도급, 용역, 위탁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제9조의 조치 의무 (다만,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)
	제10조 (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9조(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)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망사고 :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(병과 가능) - 사망 외 사고 :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	제11조 (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제10조(중대시민재해 처벌)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벌금형을 과함(양벌 적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망사고 : 50억원 이하의 벌금 - 사망 외 사고 : 10억원 이하의 벌금
제4장 보칙 	제13조 (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4조(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)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, 발생 일시와 장소,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(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)
	제15조 (손해배상의 책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주,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 책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- 의무위반행위의 종류와 내용 -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-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- 의무위반행위의 기간·횟수 -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-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 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
	제16조 (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 이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·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- 사업주,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- 사업주,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-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
부칙	제1조 (시행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('22.01.27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,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(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)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○ 제16조(정부의 지원 및 보고)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